〈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gold 한국금거래소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20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3.09.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07.05]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주소 www.exgold.co.kr 대표이메일주소 sjg1092@exgold.co.kr

한국금거래소

정보공개서

[(주)한국금거래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한국금거래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피카디리플러스)]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70-4717-076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741-631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4717-0767]

I.	가맹본부의 일	!반 현황	•••••	•••••••••••••	,
П.	가맹본부의 기	'맹사업 현황 ···	••••••		••••••
ш.	가맹본부와 그	나 임원의 법 위	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	l한 조건 및 제	한		
VI.	가맹사업의 영	l업 개시에 관 현	한 상세한 절차외	ト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	l영 및 영업활동	통 등에 대한 지원	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한국금거래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피카디리플러스)				
㈜한국금거래소	법인 설립등	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 [] [] []	2005년 01월	10일	2005년01월07일	송종길	070-4717	-0767	02-741-6314
	법인 등록 번호	110111	-3146746	사업자등록번	ठे	1 01-8	6-1151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송 종 길	 한국금거래소	피카디리플러스)			
(대표)	 	인축급기대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김 안 모	 한국금거래소	피카디리플러스)			
(사내이사)		[인숙료기대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김 종 인	한국금거래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피카디리플러스)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강 진 모	⇒L つ. つっl つll ょ	피카디리플러스)			
(사내이사)	경 진 포 	한국금거래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이 경 일	=L ¬ ¬ ¬ ¬ ,	피카디리플러스)			
(사내이사)		한국금거래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한국금거래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임 현 성		피카디리플러스)			
(사내이사)	о U 0	현취급기메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김 진 걸	한국금거래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	-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피카디리플i	러스)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명 한국금거래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9-	-1호, 9-4호(돈의동,	
사용인			피카디리플러스)			
(감사)	오 동 명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종길	070-4717-0767	02-741-6314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 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한국금거 래소디지털 에셋	한국금거래 소	2022.11.01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8층	김종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한국금거래소]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귀하는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국금거래소								
상 호	한국금거래소 ○○○ 점								
	중 골드쉘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5627 (등록일자 2012.11.27.)							
상표(서비스표)	GOLDSHELL © KOGE-KOGE- (S) K O R E A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4798 (등록일자 2012.11.15.)							
	G O L D EXCHANGE 한국금거래소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11464 (등록일자 2011.06.08.)							
로 고	© O L D 한국금거래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40,680,686	60,434,196	80,246,489	1,835,555,139	13,795,403	6,970,067
2022년	149,338,035	72,059,361	77,278,673	1,781,038,044	11,428,755	8,696,340
2021년	208,688,894	134,362,160	74,326,734	2,651,438,010	14,633,897	9,171,719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을 명확히 분리 하기가 힘들어 가맹본부의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관련여	ы ni	7] 0]		개인별 경력	
부	성 명	직 위	기 간	경력내용	담당업무
관련	송종길	대표이사	2023.01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대표이사
관련	김안모	사내이사	2023.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경영
관련	김종인	사내이사	2023.01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경영
관련	강진모	사내이사	2021.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경영
관련	이경일	사내이사	2021.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경영
관련	임현성	사내이사	2021.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경영
관련	김진걸	사내이사	2021.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CFO
관련	오동명	감사	2020.03 ~ 현재	(주)한국금거래소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	원수	직원수
시 심	상근	비상근	역전도
2023년 12월 31일	3	5	11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한국금거래소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일자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중 골드쉘	제35류 귀금속 도매업등28건	2012년 11월15일	제41-0244798호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2032년11월15일			
GOLDSHELL	제35류 귀금속 도매업등28건	2012년 11월27일	제41-0245627호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2032년11월27일			
KOREA GOLD EXCHANGE 한국금거래소	제36류 골동품감정업 등 50건	2011년 6월8일	제41-0211464호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2031년6월8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Π. 가맹본부의 [한국금거래소]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금거래소]을 시작한 날: 2012년 4월 23일 (가맹점영업시작일)

2. [한국금거래소]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골드쉘	김 안 모	2012년4월 ~ 2020년12월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9층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골드쉘	김 현 모	2021년1월 ~ 2022년10월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7층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골드쉘	김 안 모	2022년11월 ~ 2022년12월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9층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골드쉘	송 종 길	2023년1월 ~ 2023년2월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9층
㈜한국금거래소	한국금거래 소	송 종 길	2023년3월 ~ 현재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 피카디리플러스9층

3. [한국금거래소]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한국금거래소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인수리기네스	기타도소매	귀금속,예물,주얼리,시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국금거래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i>ਜ</i> ਼ੀ ਨੂਰੀ		2023.12.3	1		2022.12.3	1		2021.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7	95	2	97	95	2	88	88	
서울	21	19	2	21	19	2	19	19	
부산	5	5		6	6		4	4	
대구	1	1		1	1				
인천	7	7		6	6		5	5	
광주	2	2		2	2		2	2	
대전	2	2		2	2		2	2	
세종	1	1		1	1		1	1	
울산	1	1		1	1		1	1	
경기	32	32		32	32		30	30	
강원	4	4		4	4		4	4	
충북	3	3		3	3		3	3	
충남	3	3		3	3		3	3	·
전북	2	2		2	2		2	2	

전남	3	3	3	3	3	3	
경북	3	3	3	3	2	2	
경남	6	6	6	6	6	6	
제주	1	1	1	1	1	1	

5. 바로 전 3년간 [한국금거래소] 가맹점 수 (별첨3)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95	2	2	_	2	95
2022	88	9	2	_	2	95
2021	69	19	_	_	5	88

6. [한국금거래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한국금거래소]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 준 (별첨2)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기메저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1 1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95	1,210,751	56,723	9,563,628	988,535	70,050	1,533	1곳 제외
서울	19	2,103,230	134,822	9,563,628	988,535	180,320	14,311	_
부산	5	1,077,657	25,214	3,168,501	422,981	131,564	1,533	_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7	817,999	47,192	1,182,387	118,239	293,561	13,455	1곳 제외
광주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32	1,105,026	66,807	2,943,772	188,502	320,669	22,107	_

강원	4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6	593,007	17,032	959,914	47,996	340,989	9,743	_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 가맹점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 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매출원장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94개 가맹점 중 1개 가맹점 제외하고 전체의 매출액을 근거로 상한, 하한 및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 신규 입점한 2개 가맹점 중 6개월 미만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즉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매출액 환산한 추정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국금거래소]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기준:일)
2023	95	2,26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한국금거래소]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수단 기간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년				
광고						
0 1						
_, _						
판촉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종로3가지점	서울 종로구 종로 123 2층	02-766-2011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국민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

있는 서	사업자	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계좌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필요서	대리인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류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시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한국금거래소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따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국금거래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당사는 최초가맹금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가맹점 계약시 지급받고 있으며,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점 전 교육비, 상권설정비용,"갑"의 대체출점에 대한 기회비용등으로 반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가맹비는 개점 전 당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고 즉시 소멸됩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00				
가맹비	10,000	계약 체결 다음날 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시 일부 또는 전부	영업개시후	

2) 귀하는 당사로부터 구입하는 부자재 또는 제품의 물품대금, 로열티,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1천만원)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 후 잔금을 반환합니다(가맹계약 제12조 1항).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20,000
최초가맹금	10,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0,000				
간판/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비공개)	100,000	10,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3.3㎡ 늘 어 날 때 마 다 4,000 추가부담
최초 공급 자재 비용	㈜한국금거 래소	10,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부자재비용
교육훈련비	㈜한국금거 래소					
POS기기비용	㈜한국금거 래소	어 <u></u>		기기설치전	미설치시	월 관리비 발생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관리팀 (전화:070-4717-076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개점전 교육(매뉴얼교육) 이수 2.수시교육 이수 3.특별교육 이수	만 20세 이상, 금·은 거래에 결격사유(장물취급 등)가 없는 자
종업원	1. 매뉴얼 교육이수 및 실행	만 18세 이상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한국금거래소]는 순금과 당사가 세공하여 귀하에게 공급하는 금 등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설비 등 품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8) 한편, 당사는 가맹비 분할납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한국금거 래소	2,000/월	익월 5일까지			상표 등 지적재산권, 영업표지의 사용료
광고 분담금	㈜한국금거 래소	연간광고비의 70%를 가맹점 수로 분할납부	해당월말 5일전			별도 합의

판촉분담금	가맹사업자	실비지급			
교육훈련비	㈜한국금거 래소	200/1회	해당월말 5일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실비지급	공사 시작 3일 이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지급	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협력업체	55/월	해당월말 5일전		
지연이자	㈜한국금거 래소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 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3,543(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3%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을 해당 품목의 마진(%)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 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한국금거래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한국금 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내지 5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10%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한국금거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국금거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따로 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2) 당사가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 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금(골드바)			den nala
은(실버바)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가맹계약서 27조
웨딩세트, 주얼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27도 1항 2호,
다이아몬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2항11호
기타 보석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판매당시 금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할 어쪼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금은 등 귀금속 매입 및 판매	한국금거래소	어 으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 1개구(시,군,)당 1점포, 다만, 가맹계약 후 시가 구 단위로 분구되는 경우가맹점이 위치한 구 단위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안에 존재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하상가, 행사매장, 양판점, 관공서, 학교, 기업, 병원,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등의 특수 공간(본 계약 체결 이후 신설되는 것 포함)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도 별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상권변화[기관(관공서, 학교 등) 및 시설(기업, 병원)입주, 아파트입주, 백화점입주, 대형 할인점/마트입주, 행사매장개 장,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 널/지하상가 개발, 재개발, 도 로사정의 변경 등]로 인하여 영업지역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 따르 이시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

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 국금거래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_,	가맹점과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구분
	현대홈쇼핑	pak682@hyundaihmall.com	골드,쥬얼리	별개
	홈앤쇼핑	eujean1214@hnsmall.com	골드,쥬얼리	별개
	CJ오쇼핑	mw.gwon@cj.net	골드,쥬얼리	별개
	SK스토아	tw1.kim@sk.com	골드,쥬얼리	별개
	KT알파쇼핑	jihyung.shim@kt.com	골드,쥬얼리	별개
	쇼핑엔티	lkyoon@trncompany.co.kr	골드,쥬얼리	별개
0 71.01	디지털에셋	kordaofficial@korda.im	골드,쥬얼리	별개
온라인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은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3%	10%	1%	36%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없음	었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한국금거래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체결한 계약의 기간은당해 12월말까지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에 가, 이디오 가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	6조 1항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호 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6조 1항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호 나
○ [(주)한국금거래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6조 1항
지키지 않은 경우	3호 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1항 3호 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소정의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27조 1항 1호
○ 가맹사업자가 2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해 서비스 공급을 중 단 당하는 경우(서비스 공급의 중단)	27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	
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	27조 1항 3호
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무자료 거래(본사 공급 물품 포함)를 하거나, 밀수품 또는 장물을 매	27조 1항 4호
입한 경우	2/110 41
○ 개인에게 매입한 물건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27조 1항 5호

물품공급 중단의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0조 1항 1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 거나 인쇄한 경우	20조 1항 2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20조 1항 3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조 1항 4호
○ 제 3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조 1항 5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 는 경우	20조 1항 6호
○ "을"이 로열티 혹은 시스템사용료 혹은 공사견적금액의 5%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0조 1항 7호
○ 제14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	20조 1항 8호
한 경우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조 1하 0층
○ 제24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0조 1항 9호 20조 1항 10호
○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조 1항 11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조 1항 1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0조 1항 13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	. 0 .
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	20조 1항 14호
<u></u>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20조 1항 15호
○ 기타 본 계약에 정한 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조 1항 1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7조 2항 1호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27조 2항 2호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7조 2항 3호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7조 2항 4호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7조 2항 5호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7조 2항 6호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7조 2항 7호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7조 2항 8호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7조 2항 9호

만일 귀하의 사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35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70-4717-0767)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

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 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해당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한국금거래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금은 등 게금꼭 매엽 및 편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한국금거래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적 운영 권장시간(10:00~19:00)	3일이상 연속휴무 불가	문의:운영팀 (070-4717-07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한국금거래소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구분 광고 성격		^{서겨} 부담비율		 - 분담 절차	비고
L	十七	공 포 영구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산정	
상품된 +가명 모집된	J점 광꼬미의 -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 모집:		없음	
판촉	없음	전액	판촉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사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2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가맹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4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2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각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 벌로 3,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3개월간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아 "갑"의 가맹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위약 벌로 2,000만원을 가맹본주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에 규정된 가맹사업자의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

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고한건기사 10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기그저귀	비용부담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ᅵᆜᅶ
o점포의 시설, 장비,	o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o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에서 등 어디테?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잡임 교체	않는 점환경1선	계약서 등 공사	기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는 사유로 계약이	
o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 축공 사에	o점포의 확장 또는	첨부) → 90일	종료(계약의 해자)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는 양위 내용	이전을 수반하는	이내에 가맹본	영양도 포함되는	
7빵업의 툉왕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부 부담액을 가	경우 가맹본부	
유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단, 가맹 본부 와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취 광를 씱		기생 간 기 생 기생	부담액은 지급자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별도의 합의가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있는 경우 1년	지급한 경우에는	
			의 범위내에서	환수 가능	
			분할지급 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		
			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당일 판촉인원 파견. 이외사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한국금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한국금거래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최초 계약시 이수
		200/1회 (가맹점주)	필요시, 현재는
보수 교육	1일	100/1회 (추가	교육비를 받고 있지
		피고용자)	아 <u>ㅇ</u> 뷶 ㅁ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개점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합 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종로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28, 1층(종로3가)
2	서울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36 (청담동)

당사는 제주지점에 사업장이 있으나, 귀금속 도소매가 아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614,361	pos 자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070-4717-07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초도물품(구입강제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